

[사 건 명] 행심 2013-7

##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

청구인 : ○○○

피청구인 : ○○중학교장

[주 문]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.

[청구취지] 2013.5.23. 청구인 ○○○에 대하여 한 정보 『비공개 결정』 처분을 취소한다.

[재결이유]

### I. 사건개요

- 가. 청구인 ○○○는 피청구인 ○○중학교장에게 2013.5.6. 졸업앨범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, 2013.5.24. 행정심판 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 할 당시 까지 정보공개 여부에 관한 통지가 없는 바, 정보 『비공개 결정』 처분으로 간주하였고,
- 나. 이 결정에 이의가 있어 2013. 5. 24. 상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.

### II. 청구인의 주장

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.

- 가. 피청구인이 이메일을 통해 청구인에게 2013.5.8, 5.10, 5.14.에 걸쳐 절차상 필요치 않은 신분증 사본과, 정보공개청구의 목적 제시를 요구 하였고,
- 나. 비공개 대상이 아닌 정보를 일정기간 안에 공개하여야 하는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,

시간적 손실을 발생하게 되었다.

### Ⅲ. 피청구인 주장

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2013.6.17.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였고, 2013.6.20.까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완료 했다.

### Ⅳ. 이 건 처분의 위법·부당 여부

#### 1. 관계법령

『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』 제9조, 제11조

#### 2. 판 단

##### 가. 인정되는 사실

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.

- 1)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3.5.6. 졸업앨범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, 2013.5.26. 정보 『비공개』 결정이 간주 처리 되었고,
- 2) 피청구인은 2013.6.17. 피청구인에게 정보 『비공개』 결정을 취소하고, 2013.6.20. 정보 공개를 하였다.

##### 나. 이 사건 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

- 1) 『행정심판법』 제2조 1호 및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,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, “처분”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,

- 2) 이 사건 피청구인이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기하였으므로, 행정심판 청구 대상에 해당하나,
- 3) 2013.6.17.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2013.6.20.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에 대해 공개를 완료하였으므로, 행정청의 처분성이 없어 행정심판 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,
- 4)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.

## V. 결 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.